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4. 8. 8 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4. 8. 10

다. 상정일자 : 제3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94. 8.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주강우)

가. 제안이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구평동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공유재산 취득 : 구평동 마을회관 신축 취득

다.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m², 천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 조	면 적	추 정 가 액
구평동 마을 회관 신축	구평동 115-2 외 2필지	철근콘크리트 스 라 브	238.8	121,000

라. 신축건물 현황

구 분	면적(m ²)	사 용 용 도	구 분	면적(m ²)	사 용 용 도
지 하 1	46.33	창 고	지 상 2	67.42	노인정, 마을문고
지 상 1	53.63	농수산물직판소	지 상 3	67.42	회의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상기 회관 건물은 80. 5. 8 현재의 마을회관 건물이 신축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현재의 건물을 멸실하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신축하여 노인정, 마을 문고, 농수산물직판소, 회의실 등으로 활용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지 3필지는 사유지, 국유지 및 공유지로 되어 있어 소유자의 승낙 등이 허락되면 구평동의 발전에 일익이 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재석위원 12명중 전원찬성)